

의안번호	2201376
의 퇴 인	조승환 의원
회 답 일	2024.08.05.
추 계 번호	24C1612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0억원, 2030년 261억원 등 향후 5년간(2026~2030년) 총 1,245억원(연평균 249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 (안 제5조)	0.99	—	—	—	—	0.99	0.2
실태조사 (안 제7조)	3	—	—	—	—	3	0.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안제9조)	236	242	248	254	261	1,241	248
	240	242	248	254	261	1,245	249

주: 1)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계획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24년 위탁예산을 준용하였으며, 실제 시·도별 센터 규모 및 사업내용, 지원예산 등에 따라 결과값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4항)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7조(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평생교육 및 관련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3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안 제8조(지원신청 등)	(제1항)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6	안 제9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운영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5.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항)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도록 하여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조항으로 구체적 재정소요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¹⁾
2	안 제5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3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부처와 시·도의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수립·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함
4	안 제7조(실태조사)	○	
5	안 제8조(지원신청 등)	×	·제정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 가정 및 필요예산 추정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6	안 제9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어려운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실태조사, ③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기본계획)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사례를 준용함
 - (실태조사)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평생교육 및 관련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사례를 준용함
 - － 제정안의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 중인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용역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실시 주체가 다르고 구체적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음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

1) '24.7.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바 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해당 지원방안 이외의 지원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서울특별시
시의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준용하여 추계함

-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
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기본계획)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사례
를 준용함
 -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22년 예산 9,900만
원)을 실시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경제선지능인 평
생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다른 경비는 합산하지 아니함

[표 2]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기본계획 추가재정소요(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기본계획	99	-	-	-	-	99	19.8

주: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계획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실태조사)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경제선
지능인 실태조사”사례를 준용함
 -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 현재 ‘경제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실시 중이며, 이를 위하여 3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경제선지능인 실

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다른 경비는 합산하지 아니함²⁾

[표 3]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추가재정소요(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300	-	-	-	-	99	19.8

주: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계획 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유사사례인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준용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지원센터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모두 운영될 수 있으나, '24년 현재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서울특별시(광역지방자치단체) 한 곳³⁾⁴⁾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지원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서울특별시의 지원센터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
 - 서울특별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4년 현재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3개 팀 10명(센터장 1명, 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추진계획'(21.9.)에 따라 '(사)디티에스행복들고나'에 위탁·운영되고 있음
 - 이에 본 추계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원센터의 '24년 위탁비(총 14억원)⁵⁾와 유사한 규모로 전국 16개 시·도에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으로 하되, 추계기간 동안

2)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같이 제정안의 실태조사를 해당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용역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실시주체가 다르고 구체적 내용도 일부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음

3)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24년 7월에 '노원구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나, 설립 초기이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와 비교시 매우 작은 비율로 설립된 것이기에 본 추계서에서는 시·도에서의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해서만 추계함

4)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21년 9월 설치·운영과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를 거쳐 '22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후 '24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5) '24년 예산은 인건비 6억원, 운영비 1.4억원, 사업비 및 예비비 6.6억원 등 총 14억원임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는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변동하고 이외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위탁운영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위탁 운영비	인건비	6.4	6.6	6.8	7.0	7.2	34.1	6.8
	운영비·사업비 등	8.4	8.5	8.7	8.9	9.1	43.5	8.7
	소 계(A)	14.7	15.1	15.5	15.9	16.3	77.6	15.5
16개 시·도(B)		16	16	16	16	16	—	16
합 계(C=A×B)		236	242	248	254	261	1,241	248

주: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24년 위탁예산을 준용하였으며, 시·도별 센터규모 및 편성예산 등에 따라 결과값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와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실제 대상 및 구체적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